제262회 정기회
2007. 7. 12 (목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건설문화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6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7월 일

3. 제안이유

○ 「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」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충청북도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사무가 동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사무가 동 법률이 폐지되고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의 시행으로 시장·군수가 수렵장을 설정하도록 함에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○ 조례 폐지시 도출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